

흙작골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·공고

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흙작골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월 15일

무 주 군



1. 사업개요

- 가. 사 업 명 : 흙작골소하천 정비사업
- 나. 사 업 기 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1.12.31.
- 다. 사 업 규 모 : 하천정비 L=1.92km(양안), 부대공 1식 등
- 라. 사업시행자 : 전라북도 무주군수

2. 손실보상 협의 및 지급시기 : 2020. 1월 이후(추후개별통보)

3. 보상대상

- 가. 토 지 : 113필지 / 27,473㎡
- 나. 지장물 : 위 토지내 지장물 일체

4.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

- 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0. 1. 15. ~ 2020. 1. 30. (15일간)
- 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: 무주군청 안전재난과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- 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.
- 나.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한 후 개별 협의계약 체결하여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 지급

6. 기타사항

- 가.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
- 나. 수취인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반송될 경우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 ☎063)320-243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